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7664호, 2005.8.4공포, 2006. 1.1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의2)

(1)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III.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및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991. 4. 9. 조례 제정 및 소요 재원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출연금 742,730천원을 재원으로 총 1,105건 1,699,671천원의 학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 중 1,026건은 회수 완료하였고 79건은 회수기한 미도래 또는 회수 중에 있으며, 2007. 5월 말 현재 기금잔고는 206,344천원입니다.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 및 상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조 성 액 (A)			집 행 액 (B)		잔 액 (A-B)
	출 연 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학자금융자	기 타	
'91~'04	742,730	852,173	10,754	1,525,602	9,386	70,669
2005년		133,187	2,075	94,160		41,102
2006년		118,096	3,416	53,602		67,910
2007.5		49,775	3,195	26,307		26,663
계	742,730	1,153,231	19,440	1,699,671	9,386	206,344

* 기 타 : 92. 10. 12. 기금 결산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소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이나, 융자대상과 지원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순, 반복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굳이 새로 구성하여야 하는지는 다소 의문시 됩니다.
- 참고로 2005년 이후 학자금대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이율이 높은 고수익 금융상품에 예치하거나 기금설치의 목적 용도에 필요치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방안 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학자금 대여 및 회수 현황(2007. 5.말 현재)

(단위 : 명)

구 분	학자금 대여 인원					회 수 완 료	회 수 중	기 한 미도래
	계	'04이전	2005년	2006년	2007. 5			
합 계	1,105	1,042	35	19	9	1,026	29	50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

제2조(기금구성) ①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종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및 그 자녀로서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